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

Determination of the Auth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정 연 덕**
Chung, Yeun-Dek
운 박***
Yun Bo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 |
| II. 저작권법상 저작자 | IV. 결론 |

엔 여왕법부터 시작된 현대 저작권법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저작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1884년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부터 계속 저작권법상 논의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신분을 확정과 관한 법적 문제에 다시 이슈가 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판례와 학설에도 인간에게만 저작자 신분을 인정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문제를 소개한다. 그

<https://doi.org/10.35148/ilsilr.2021.48.243>

투고일: 2021. 2. 1. / 심사완료일: 2021. 2. 4. / 게재확정일: 2021. 2. 15.

* 이 논문은 2017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17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Completed the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리고 영미 및 대륙 법계 국가의 저작자 개념에 관한 내용을 통해 저작자의 개념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각 의견(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사용자, 공동저자, 투자자, 그리고 공공영역)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입법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결론은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설은 모두 이유가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기 어렵다. 프로그래머, 공동저자에게 부여해준 의견은 각 장점이 있지만, 이와 같이 새로운 문제도 나타낸다. 투자자가 직접 창작 과정을 참여하지 않고 저작자 신분을 인정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공공영역에 진입시키면 저작권법의 최종 목적을 위반하며, 창작에 대해서도 불이익하다.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인정해주면 과도한 보수가 이중 인센티브를 주고 인공지능에 대한 불평등 이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세는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에 자원을 투입하려는 동기를 제한해서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공동저자는 새로운 공동 혹은 결합 작품의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서, 공동저작자의 경우 일부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동저작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영역에 포함시키면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공중에게도 가치가 있는 작품은 그만큼 줄어든다. 게다가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고 고아저작물의 문제도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면 저작자를 격려하고 재창작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로 간주하면 가장 타당하다.

[주제어] 저작자, 인공지능, 인공지능 생성물, 인공지능 저작자, 사용자, 공공영역

I. 서론

최근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앤 여왕법부터 시작된 저작권법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 분야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창작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만들어진 창작물의 저작자 인정 등 저작권 문제도 발생한다.¹⁾

2014년부터 AP 통신은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Automated Insights)라는 회사와 제휴해 기업 실적 발표 기사를 워드스미스(wordsmith)라는 로봇 기자에게 맡겼다.²⁾ 2020년 11월

1) Annemarie Bridy, "Coding Creativity: Copyright and the Artificially Intelligent Author",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Vol.5, 2012, p.3; Christopher Buccafusco, "A Theory of Copyright Authorship", Virginia Law Review, Vol.102, 2016, p.1255.

2) 동아사이언스, "인공지능 밀린 기자,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https://dongascience.com/news.php?id=10943>>, 검색일: 2021. 1. 15.

종합편성채널 MBN이 국내 방송사 최초로 AI앵커를 뉴스 진행에 투입했으며 ‘김주하 AI 앵커’는 실제 김주하 앵커의 모습과 동작, 목소리 등을 10시간 녹화한 후 딥 러닝으로 학습해 탄생한 인공지능 결과물이다.³⁾ 2020년에는 세계 인공지능대회(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클라우드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AI 걸그룹’이 등장하였다.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로 정의하고 있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스스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부여가 어렵다.⁵⁾

인공지능 저작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서 먼저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창작자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저작자가 정해져야 생성물의 보호 방식, 권리귀속, 보호기간 등 저작권법상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자체뿐만 아니라 그의 설계자, 사용자, 투자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가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개념에 따라 학자 간의 차이가 있어서 주로 2가지로 나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낮은 수준을 약인공지능(Weak AI), 인간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초월하는 수준을 강인공지능(Strong AI) 그리고 초인공지능(Super AI)으로 구별하고 있다.⁶⁾ 그리고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기술적 인공지능, 기능적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참 인공지능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⁷⁾ 인공지능을 논의할 때 사람들은 흔히 ‘약한’인공지능과 ‘강한’인공지능의 구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구별은 인공지능들을 서로 구별한 때만 흔히 사용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인간과 구별하는 데에서도 사용된다. 이 점은 인공지능에 대해 세 가지 유형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첫째는 인간의 창의적인 마음과 인공지능을 구별하는 이론이며, 둘째 인간의 포괄적인 능력을 강한 지능의 기준으로 삼는 관점이며, 셋째는 인간보다 우월한 종을 강한 인공지능의 기준과 목표로 삼는 관점으로 구별한 주장도 있다.⁸⁾

3) 국민일보, “김주하 앵커 아니었어? 소름돋는 AI 아나운서 데뷔 장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930259&memberNo=12282441&vType=VERTICAL>>, 검색일: 2021. 1. 15.

4) 新浪VR, “人工智能微软小冰:2020WAIC主题曲《智联家园》创作‘人’”, <<http://vr.sina.com.cn/news/hz/2020-07-09/doc-iircuyvk2932467.shtml>>, 검색일: 2020. 11. 10.

5)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95쪽;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20, 415쪽.

6) 손승우/김유명,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28쪽.

7) 박재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선 인지과학적 접근”,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지 제6권 제10호, 2016, 545쪽.

8) 김진석, “‘약한’인공지능과 ‘강한’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 제117집, 철학연구회, 2017, 111쪽.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개념 등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에 관련한 입법 현황을 소개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검토한다.

II. 저작권법상 저작자

1. 영국

앤 여왕법이 시행되기 전 영국은 인쇄허가법을 시행해왔다. 1704년 다니엘·데포(Danie Defoe)가 언론 규제에 관한 수필(*An essay on the regulation of the press*)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해적판을 고발할 권리를 저자(authors)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국내·외에 불법 복제 경쟁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판사들은 자기들을 소유자(proprietors)로 지정했다.⁹⁾

1709년 앤 여왕법을 통과하여 저작권(authorship) 개념이 법률 영역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 법령은 실제로는 런던의 영국출판자협회가 추진했다. 초기의 저작자 신분을 확정하는 것은 저작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저작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다. 이에 따라서 앤 여왕법은 세계 최초의 현대적 의미가 있는 저작권법이었다.¹⁰⁾ 이에 대하여는 앤 여왕법의 보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실체내용을 담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어서 현대적 의미를 띤 저작권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¹¹⁾

앤 여왕법에 의하여 저작자는 인쇄와 출판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지만, 거래의 실체에 있어서 저작자는 인쇄업자나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매각함으로써 그 권리를 인쇄업자나 출판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고를 처분한 저작자의 상황은 인쇄허가법을 실행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¹²⁾ 앤 여왕법에서 저작자 개념은 서적 제작이라는 노동에 대한 보수라는 노동 가치론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저작자는 존 로크 사상의 ‘재산적 권리의 보유자’이었다.¹³⁾

9) Peter Jaszi, "Toward a Theory of Copyright: The Metamorphoses of 'Authorship'", *Duke Law Journal*, Vol.40 No.2, 1991, p.468.

10) Ibid., p.469.

11) 배대현, "저작자보호의 관점에서 본 앤 여왕 저작권법(Statute of Anne)", IT와 법연구 제9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4, 77쪽.

12) 천성권, "영국저작권법과 저작자", 한양법학 제30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9, 221-222쪽 참고.

18세기 초 · 중반의 *Burnet v. Chetwood*(1720)와 *Gyles v. Wilcox*(1740) 두 사건은 저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 투입된 수고와 노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저자의 창작성이나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Millar v. Taylor*(1769) 사건에서 맨스필드 판사는 앤 여왕법과 관련 없이 관습법상의 영구적인 저작권을 저자가 가진다고 판시하였다.¹⁴⁾ 18세기 말 등장하기 시작한 낭만적 독창성의 개념인 천재의 창작성 및 상상력은 축약이나 번역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⁵⁾ 영국 저작권법상 노동의 투입을 저작권 보호요건의 중심에 두는 개념은 로크의 사상과 18세기 계몽주의라는 영국 특유의 시대적 배경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저작물이 생성될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적용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¹⁶⁾

영국 저작권법 제9조의 (1)¹⁷⁾에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author)”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person)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인간이 창작한 작품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제9조의 (3)¹⁸⁾의 규정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자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견해도 있다.¹⁹⁾ 제84조의 (8)에서 저작자로서 지위가 허위로 부여하지 않게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²⁰⁾ 현행 영국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자가 인간으로만 정의되므로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은 최초로 이에 관한 입법을 했으며 이에 주로 내용은 III 부분에 살펴본다.

13) John Feather, *Publishing, Piracy and Politics-Historical Study of Copyright in Britain*, Mansell, 1994, p.51.

14) *Millar v. Taylor*(1769), 98 ER 201.

15) 윤권순, “영국 저작권법상 ‘창작성(originality)’ 개념의 역사적 기원”,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90쪽.

16) 윤권순, 위의 논문, 100쪽.

17)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9 Authorship of work.

(1) In this Part “author”, in relation to a work, means the person who creates it.

18)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9 Authorship of work.

(3)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which is computer-generated, the author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 are undertaken.

19) 김윤명, “人工智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考察”,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160쪽.

20)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84 False attribution of work.

(8) This section applies where, contrary to the fact-

2. 미국

미국의 저작권 보호 정당성의 근거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있으며, 공리주의 궁극적 목표는 지적 저작물의 확산에 있다.²¹⁾ 처음부터 성명표시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에 대해 없었다가 베른협약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미국도 저작자는 실제로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자신의 이름이 이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²²⁾ 1976년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물에 실효적인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물의 작을 자극하는 것”이며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²³⁾ 따라서 저작자의 결정목적은 창작활동의 최대화 시키기 위하여 저작권의 이익을 가장 잘 분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²⁴⁾

미국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가 없지만, 저작자의 이름이 그가 창작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미국 저작권법 제106(a))²⁵⁾. 또한, 대륙법계에서 저작자가 창작한 자연인에 한정된 입장과 차이가 있어 저작자는 창작한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창작을 기획한 제작자도 저작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한 넓은 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와 정부 발표 보고서를 보면 저작자를 인간만으로 인정한다.

미국 ‘Feist 사건’에서 저작물에 대해 최소한의 창조성(creativity)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²⁶⁾ 연방대법원은 수집한 전화번호의 창작적인 기준이 없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것은 창작적인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를 모으기만 하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²⁷⁾ 따라서 인공지능의 생성물이라도 최소한

21) 이성웅, “원숭이 셀카의 저작자성 -미국의 Naruto v. Slater Case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제30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101쪽.

22) 17 U.S.C. § 106A(a)(1)(B).

23) Diamond v. Am-Law Publishing Corp., 745 F.2d 142 (2d Cir. 1984).

24) Holly C. Lynch, “What Do an Orangutan and a Corporation Have in Common?: Whether the Copyright Protection Afforded to Corporations Should Extend to Works Created by Animals”, Ohio Northern University Law Review Vol.42 Issue 1, 2015, p.270.

25)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106a • Right of certain authors to attribution and integrity

(A) to claim authorship of that work.

(B) to prevent the use of his or her name as the author of any work of visual art which he or she did not create;

26)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

27) 정연덕, 저작권의 이해 개정판, 세창출판사, 2019, 37쪽.

창조성을 만족하여야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관련 사건에 대해 ‘원숭이 셀카’ 사건에서 법원은 현행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인간으로 한정되어 원숭이는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²⁸⁾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서 원숭이 셀카 사진을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슬래터(David Slater)는 사진을 찍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원숭이는 동물이어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판시하였다. 누구도 저작자가 되지 않아 저작물이 공유영역에 있다고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하는 창작활동의 고취와 연결되지는 않는다.²⁹⁾ 기술 환경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의 저작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건은 비(非)인간 저작권의 광범위한 기준에 나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³⁰⁾ 미국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지만, 미국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인공지능은 저작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³¹⁾

3. 프랑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출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³²⁾ 저작인격권에 포함된 성명표시권은 저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권리로서 성명표시권의 발전사와 입법 보호 과정에서 저작자에 대한 신분 인식의 변화도 보인다. 성명표시권은 저자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1863년 프랑스 법원은 작곡가와 뮤지컬 콘서트 감독 간의 분쟁을 결정하여 성명표시권을 인정하였다.³³⁾ 저작인격권은 1870년대 프랑스 저작권법에 나타난 ‘droit moral’에서 기원하며,³⁴⁾ 저자가 자신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며 자기 설명을

28) *Naruto, et al., v. David John Slater, et al.*,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Case No. 15-cv-04324-WHO, Dkt. Nos. 24, 28.

29) 이성웅, 앞의 논문, 123쪽.

30) Victor M. Palace, “What if Artificial Intelligence wrote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Florida Law Review*, Vol.71, 2019, p.228.

31) Final Report,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1979).

32) 배대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법리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권 제21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6, 164쪽.

33) 윤권순,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기원”,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2018, 104-105쪽, 재인용.

34) 박인회/이봉림,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37쪽.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즉, 성명표시권을 포함하여 총 6가지의 저작권인격권을 인정하였다.³⁵⁾

프랑스 저작권법에 따른 정신적 창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그의 창작의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프랑스 저작권법 제111조의1 제1항). 저작자는 그의 성명, 저작자의 지위 및 그의 저작물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저작권법 제121조의1 제1항). 그리고 이 권리는 영속적이고 불가양의 권리이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저작권법 제121조의1 제3항).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언으로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프랑스 저작권법 제121조의1 제5항).

이에 따라서 프랑스 저작권법에서 저자가 인간만으로 한정되 아니지만 만들어진 저작물에 주로 정신적인 권리를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프랑스 저작권법은 컴퓨터는 인간이 아니므로 컴퓨터가 창작한 인공지능 생성물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인다.

4. 독일

독일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론은 17세기 초와 18세기에 프랑스와 같이 발전되었지만,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 저작권법은 1837년 제정된 프로시아 저작권법이며, 출판업자가 아닌 저자가 보호의 중심이고, 보호 대상은 특정 물리적 상품이 아닌 추상적 저작물이다.³⁶⁾

19세기 초 독일의 법률은 명시적으로는 저자의 비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지는 않았으며, 그 후에 독일에서 이론 및 판례를 통해 저작권인격권 개념이 정착되었다.³⁷⁾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2조의2). 저작자란 저작물의 창작자이다(독일 저작권법 제7조). 저작자는 저작물상 자신이 저작자임을 인정하는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를 할 것인지의 아닌지 및 어떤 표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13조).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물상 자신의 정당한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해치게 하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왜곡 혹은 여타 침해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독일 저작권법 제14조).

35) 강명수, “저작권인격권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제5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727쪽.

36) 윤권순, 앞의 논문(注15) 84쪽.

37) 윤권순, 앞의 논문(注33) 113-114쪽.

독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에 대해 인간으로만 한정된 규정이 있으므로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서 컴퓨터가 만든 인공지능 생성물에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자에 관련한 권리 규정을 보면서 주로 정신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아무리 발달하여 우월한 기능이 있어도 정신적인 자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5. 기타

19세기에 이르러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저작인격권(moral right)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베른협약은 1886년 9월 9일 최초로 성립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써 초기 당시의 협약에서는 성명표시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가³⁸⁾ 1928년 베른협약 로마협정 제6조의2 제1항³⁹⁾에서 처음으로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⁴⁰⁾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저술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유래하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를 선언하여 이를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라고 한다.⁴¹⁾ 따라서 그 지위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로부터 베른협약 가입국은 물론 비가입국도 이를 인정하도록 권유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 국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⁴²⁾

국제조약의 저작자에 대한 정의나 인간 저작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베른협약은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저작자가 인간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8) 강명수, 앞의 논문, 729쪽.

39)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rticle 6(1): Independently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and even after the transfer of the said rights, 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of the work and to object to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or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the said work, which would be prejudicial to his honor or reputation.

40)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7(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41) 남희섭, “창작 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한국언론법학회, 2019, 183쪽.

42) 오승중,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424쪽.

III.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하거나 권리귀속 등 여러 가지 저작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권리 배분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검토한다. 주로 인공지능 자체(기계), 프로그래머, 이용자, 공동저자, 투자자 중의 누가 과연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자가 될 것인지를 검토한다.

1. 인공지능(기계)

인간이 간섭하지 않고 인공지능만으로 창작한 발명에 대해, 과연 인간이 간섭하지 않고 인공지능만 창작된 생성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⁴³⁾ 이에 대하여 동물까지 포함하여 비(非)인간이 저작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하며 더 많은 가치가 있는 창조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인공지능이 저작자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⁴⁴⁾ 역사적으로 보면 법원은 신흥기술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⁴⁵⁾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1884년에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⁴⁶⁾이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에서 법원은 카메라가 사진을 만드는 중간 역할을 했을 뿐이라 작품을 만드는 효력이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므로 판단해서 즉, 카메라의 역할에 대하여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단으로만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인간들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창작의 수단으로 삼는 결과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⁴⁷⁾ 즉 카메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이 창작물을 만든경우에 카메라는 창작자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카메라와 같은 도구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5년부터 미국 저작권청은 컴퓨터가 생성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43) Ryan Abbott, “I Think, Therefore I Invent: Creative Computers and the Future of Patent Law”,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57 Iss.4, 2016, p.1079.

44) Ryan Abbott, op. cit., p.1121.

45) Robert Yu, “The Machine Author: What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s Appropriate for Fully Independent Computer-Generated Work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65 Iss.5, 2017, p.1253.

46)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111 U. S. 53(1884).

47) Annemarie Bridy, op. cit., p.5; Robert C. Denicola, “EX Machina: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Generated Works”, Rutgers University Law Review Vol.69:251, 2016, p266.

대해 논의하였지만,⁴⁸⁾ 미국 의회는 저작권 발전 역사에서 권리는 인간에게만 부여하였으며 기계에 권리를 배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계들은 창작을 위한 동기가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전기나 다른 동력일 뿐이다.⁴⁹⁾

인공지능이 자체로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과학기술이 인공지능 생성물의 영역으로 파고들면서 인간이 수많은 작품 창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저작자로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⁰⁾ 그리고 인공지능 저작자로서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공지능의 향상과 발전을 격려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주장도 있다.⁵¹⁾ 다른 사람과 독립하고 스스로 창작성이 있는 생성물을 창작한 인공지능은 당연히 저작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⁵²⁾

오늘날 대부분 국내외 학설과 판례는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기준이 절대적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작가 자신의 독자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 자체가 저작자가 되지 않는 견해는 다수가 존재한다. 저작자에게는 청중에게 본인의 정신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보여주는 의도를 반영하는 창작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저작자 여부를 판단에서 이러한 의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⁵³⁾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실 저작자라도 법적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있을지⁵⁴⁾ 또는 저작권과 내지 저작자 신분까지 인공지능 자체에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문제와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저작권법의 목표에 위배될 수 있다.⁵⁵⁾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적이고 신속한 대량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고 프로그래머 또는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창작

48) Pamela Samuelson, "Allocating Ownership Rights in Computer-Generated Works",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Vol.47, 1986, p.1192.

49) Ibid., p.1199.

50) Robert C. Denicola, op. cit., p.269.

51) Ryan Abbott, op. cit., p.1079.

52) Russ Pearlman, "Recogniz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as Authors and Inventors Under U. S. Intellectual Property Law", Richmond Journal of Law & T Technology, No.2, 2018, pp.10-11.

53) Gerald Spindler, "Copyright Law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Vol.50, 2019, pp.1049-1051.

54) Ana Ramalho, "Will Robots Rule the (Artistic) World? A Proposed Model for the Legal Status of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Journal of Internet Law, Vol.21 No.1, 2017, p.13.

55) Victor M. Palace, op. cit., p.234.

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⁵⁶⁾

인공지능 시스템에 갖추어지면 인공지능이 자체로 독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배경에는 제작을 한 사람이나 제작 회사 있으면 인공지능을 그 생성물의 저작자로 간주하면 저작권법 목표에 맞지 않는다.⁵⁷⁾ 현재 형태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달성한 선호도나 목표를 결정할 수 없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영역과 목표를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고 한다. 인공지능은 목표 달성 방법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인공지능을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인 법인격으로 규정하려는 제안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⁵⁸⁾

만약 인공지능이 진화해서 인간에 가까운 지능과 창작능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인공지능을 저작자로서 보호하여 실질적 운영자 또는 이용자는 저작권자로서 이중적 틀을 반영한 특별법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⁵⁹⁾ 인공지능에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행 한국저작권법처럼 저작자의 지위를 자연인에게만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계에도 인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 정책적 과제로서 최소한(1) 인공지능의 권리능력 및 (2) 경제적 인센티브의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⁶⁰⁾

저작물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저작자 명의 표시 여부 또는 표시한다면 실명을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명을 표시할 것인가의 결정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⁶¹⁾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자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인공지능에 국민 신분이 주거나 전자인간 신분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저작물이 저작권침해를 받았을 때 과연 인공지능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이다.

56)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5판, 弘文社, 2020, 266쪽.

57) Shlomit Yanisky-Ravid, "Generating Rembrandt: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and Accountability in the 3A Era-The Human-Like Authors Are Already Here-A New Model", Michigan State Law Review, Vol.659, 2017, p.725.

58) Christopher Buccafusco, "A Theory of Copyright Authorship", Virginia Law Review, Vol.102, 2016, p.1260.

59) 차상욱,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2쪽.

60)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61쪽.

61) 오승중, 앞의 책, 438쪽.

2. 프로그래머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자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 창의성에 대해 가장 크게 이바지해서 모든 인공지능 생성물은 프로그래머의 지적으로 탄생했다고 할 수도 있다.⁶²⁾ 저작권법과 판례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⁶³⁾

프로그래머를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도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력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프로그래머에게 저작자 신분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인공지능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경제성도 가장 커 보인다.⁶⁴⁾ 인공지능 혹은 기계가 저작자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실질적인 기여자라고 하며 프로그래머의 창작력이 없으면 생성물이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⁶⁵⁾

반대로 2017년 미국 저작권청 발표한 지침서에는 ‘원숭이 셀카’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아닌 자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 결과가 담겨 있으며 지침서 제306장에서는 저작물성을 구비하기 위해서 해당 창작물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저작물이란 ‘사람이 만든 작품’만 해당되고, 자연이나 동물, 식물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다시 판단하였다.⁶⁶⁾

이에 따라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품을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작품도 프로그래머의 개인 표현이나 개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를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⁶⁷⁾ 그리고 앞의 언급했던 것처럼 원숭이가 우연히 핸드폰을 가지고 셀카를 찍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원숭이를 저작자라고 부르지 않는다.⁶⁸⁾

그리고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를 프로그래머까지 확대하면 이 인공지능은 무제한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저작권법의 목표를 넘어선다.⁶⁹⁾ 또는 프로그래머를 인공지능 생성

62) Robert Yu, op. cit., p.1258.

63)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64) Kalin Hristov,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pyright Dilemma”,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The Franklin Pierce Law Center, Vol.57 No.3, 2017, p.445.

65) Pamela Samuelson, op. cit., p.1205.

66) U.S. Copyright Office, “The Compendium of U. S. Copyright Office Practices, Third Edition”, 2017.9.29.

67) Ana Ramalho, op. cit., p.16.

68) 김현경, “저작권 귀속 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회, 2017, 347쪽.

물의 저작자로 간주하면 지나친 인센티브가 생기고 인공지능에 대해 불평등 사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⁷⁰⁾ 따라서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용자(user)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자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인공지능 자체에 관한 분석은 아니지만, 1978년에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여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연방의회가 구성한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이하 ‘CONTU’라 함) 보고서에 의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창작한 생성물의 경우에, 그 컴퓨터의 이용자가 저작자로 인정해도 된다고 규정된다.⁷¹⁾ 그러나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에 버금가는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한 경우에도 그대로 70년대의 보고서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⁷²⁾ 차라리 권리소진의 원칙(principle of exhaustion)을 도입하고 프로그래머의 권리가 한번 판매 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⁷³⁾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여 창작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발휘된다면 이때에는 그 인간을 저작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생성된 작품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⁷⁴⁾ 저작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 표현 없어도 창작을 하면 저작자가 될 수 있다.⁷⁵⁾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배분하는 목적은 창조적 작품을 세상에 가져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배분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기여가 적더라도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신분이 사용자에게 지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있다.⁷⁶⁾ 인공지능 창조를 개시하는 인공지능 사용자는 생성물의

69) Megan Svedman, “Artificial Creativity: A Case Against Copyright for AI-Created Visual Artwork”, IP Theory, Vol.9: Iss.1, 2020, p.15.

70) Victor M. Palace, op. cit., p.238.

71) Final Report,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1978). p44.

72) 정상조, 앞의 논문, 46쪽.

73) 정상조, 앞의 논문, 54쪽.

74) 오승중, 앞의 책, 74쪽.

75) 신재호, “저작자 개념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61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213쪽.

76) Pamela Samuelson, op. cit., p.1203.

저작자 및 저작권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⁷⁷⁾ 경제학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면 더욱 현실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많은 작품을 창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⁸⁾

사용자는 인공지능 소유자에게 구매, 임대 또는 사용허가비용을 지불한다. 이 비용은 이미 프로그래머가 만들어낸 가치에 인센티브를 줬는데, 프로그래머를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로 본다면 지나치게 보호가 될 수 있다.⁷⁹⁾ 인공지능 생성물의 상업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버튼 하나 누르거나 간단한 지령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다.⁸⁰⁾ 마지막으로 사용자를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는 인공지능이 주체인지 보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⁸¹⁾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을 격려하기 위해 누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면 사용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4. 공동저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자를 사용자와 프로그래머가 공동으로 창작자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사용자와 프로그래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어서 공동저작으로 보는 방법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⁸²⁾ 현행 저작권법 이론 체계에서는 사용자와 프로그래머가 공동저작자로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86년 미국 당시 ‘기술평가국(the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이하 OTA라 함)’은 앞의 언급했던 CONTU와 입장이 다르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생성물에 대해 법적으로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정했지만, 공동저작자가 구체적인 누구인지 즉, 프로그래머인가 혹은 이용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두인가 하는 것에 있었다.⁸³⁾

77) Robert C. Denicola, op. cit., p.286-287.

78) Robert Yu, op. cit., p.1261.

79) Pamela Samuelson, op. cit., p.1203.

80) Ibid.

81) Robert C. Denicola, op. cit., p.284.

82) Robert Yu, “op. cit., p.1259.

83) Annemarie Bridy, op. cit. p.23.

공동저작자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공지능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공동저작자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처분할 때에 프로그래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수긍하기 어렵다.⁸⁴⁾ 또는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작품의 경우 프로그래머와 알려지지 않은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공동 혹은 연합의사를 이루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복수의 저작자가 관여하여 창작하였을 때, 그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으면 ‘공동저작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결합 저작물’이라고 부른다.⁸⁵⁾ 즉, 공동저작자로 부여하기 전에 인공지능 생성물은 공동저작물인지 혹은 결합저작물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자를 사용자와 프로그래머가 공동으로 창작자가 되기는 어렵다.

5. 투자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자를 인공지능 개발에 관여한 투자가가 창작자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투자가가 저작자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된 신문 기사, 음악, 설계도 등은 기업이 운영하는 영리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업의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투여한 자금을 기업으로서는 회수할 수가 없고 이것은 곧 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며, 다양한 창작활동에 따른 사회의 문화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 인공지능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을 인정하고 이를 기업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⁸⁶⁾

그러나 저작권법상 누가 투자했는지는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고 참조할 만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고용계약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각 국가의 관할권 범위에 가능성을 근거로 투자를 저작자 판단요소를 제안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는 사용자가 저작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한다.⁸⁷⁾ 결론적으로 투자자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창작물

84) 정원준,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고려법학 제9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282쪽.

85) 오승중, 앞의 책, 348쪽.

86) 이성웅, 앞의 논문, 126쪽.

87) 김현경, 앞의 논문, 349쪽.

의 저작자로 보기는 어렵다.

6. 공공영역(public domain)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창작물은 공공의 영역으로 보아 누구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인공지능 생성물을 공공영역에 진입시켜 저작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인공지능 생성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누구나 방해받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편하게 창출할 수 있으며,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⁸⁸⁾ 인공지능은 작품의 창작자로서 창조의 격려가 필요 없지만, 인공지능 생성물을 전송하는 사람은 공공영역 서적의 출판업자가 사용자에게 책의 사본에 돈을 지불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격려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즉, 인공지능 생성물이 공공영역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무료가 아니다.⁸⁹⁾ 인공지능과 인간이 창의적인 분야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⁹⁰⁾

그러나, 인공지능 생성물을 공공영역에 진입시키는 데에는 큰 단점도 있다.⁹¹⁾ 즉, 인공지능 생성물에게 일정한 보호 기간이 없으면 프로그래머나 투자자에게 최소한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없어지며,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재창작을 격려하는 기본적 역할도 사라진다.⁹²⁾

인공지능 생성물을 공공영역에 들어가면 저작권 침해자가 반드시 침해된 작품은 인공지능 생성된 것과 저작권 보호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혹은 원저작자가 저작권 보호기관에 기계가 아닌 사람이 창작된 작품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의 작품과 인공지능 생성물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⁹³⁾ 즉,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자가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을 자기의 저작물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구별해 내기는 쉽지 않다.⁹⁴⁾

88) Ana Ramalho, op. cit., p.18.

89) Ibid., p.19.

90) Victor M. Palace, op. cit., p.240.

91) Kalin Hristov, op. cit., p.438 ; Robert Yu, op. cit., p.1265.

92) Pamela Samuelson, op. cit. p.1224.

93) Robert Yu, op. cit. p.1266.

94) 윤선희/이승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52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187쪽.

고용제도의 ‘고용자’와 ‘고용주’를 재해석하는 것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공공영역에 진입시키는 단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있지만,⁹⁵⁾ 구체적인 해석 내용이 없다. 인공지능 생성물을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창작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 문제가 증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가 저작자인지를 알 수 없는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

7.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의 검토

7.1 저작자 범위 확대

인공지능 생성물의 광범위 적용은 경제문화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하여 법으로 인공지능 사용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된다.⁹⁶⁾ 저작권법에서 저작자 정의에 대해 개정하여 인공지능을 저작자의 보호범위 내에는 포함시킨다.⁹⁷⁾ 컴퓨터 내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을 활용한 어문, 연극, 사진,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기여를 한 자로 본다고 내려준 견해도 있다.⁹⁸⁾

7.2 저작인접권으로 보호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배포와 전송에 관한 권리를 일종의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으로 인정하는 입법론적인 견해도 있다.⁹⁹⁾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이고,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공중이 다양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¹⁰⁰⁾ 따라서 인공지능의 생성물 자체에 대한 권리는 아니며, 다른 사람이 음원에 고정하거나 실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⁰¹⁾

95) Kalin Hristov, op. cit., p.440.

96) Russ Pearlman, op. cit., p.8.

97) Kalin Hristov, op. cit., p.440.

98) 김운명, 앞의 논문, 162쪽.

99) Ana Ramalho, op. cit., p.16.

100) 정연덕, 앞의 책, 139쪽.

101) 정원준, 앞의 논문, 278쪽.

7.3 인공지능 창작물 등록 제도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라는 제안서 중에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등록제도를 채택해야 되는 관점도 있다.¹⁰²⁾ 저작물 시장에서 인간 창작물과 인공지능 생성물 간에 침해 및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등록제도 정비를 통해 인간의 창작물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시한 견해도 있다.¹⁰³⁾ 등록을 통한 보호이므로 예를 들어 등록 후 3년과 갱신을 통한 3년으로 권리 유지 기간을 구성하여, 권리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인공지능 창작물은 신속하게 공공영역에서 활용토록 하여 관련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¹⁰⁴⁾

7.4 등록기간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기간은 별도의 등록 없이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형태 모방해위를 금지 규정의 기간이나, 별도의 등록 없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나 표시된 콘텐츠 등의 보호 기간을 고려할 때 6년 이상의 보호 기간이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있다.¹⁰⁵⁾

7.5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2017년 2월 16일에 유럽연합의회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게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s)’ 지위를 부여한 ‘로봇에 관련한 민법규칙’을 통과시켰다.¹⁰⁶⁾ 가장 앞선 스스로 능동할 수 있는 로봇을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전자인간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 하였으며, 제3자에게 미칠 피해를 보완하는 내용도 규정한다.

102) 윤선희/이승훈, 앞의 논문, 181쪽.

103) 손승우, 앞의 논문, 92쪽.

104) 윤선희/이승훈, 위의 논문, 187쪽.

105) 윤선희/이승훈, 앞의 논문, 186쪽.

106)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2015/2103(INL)).

7.6 기타 법률 안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 또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과는 구별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신설해야 된다.¹⁰⁷⁾ 예를 들면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도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해도 된다는 견해도 있다.¹⁰⁸⁾

앞의 언급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창작한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특허 등록은 창의적 표현보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한다. 또는 저작권보다 특허 등록 절차, 심사, 비준 등은 비용과 시간에 더욱 많이 투자해야 한다.¹⁰⁹⁾ 어떤 식으로든 인공지능 저작물을 인정하고 이를 법으로 보호할 경우 인공지능 저작물의 무한대의 양산으로 인하여 인간의 창작 및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¹¹⁰⁾

IV. 결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다시 저작자로서의 신분 확인과 다른 법적 문제에 커다란 도전을 가져온다.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야기하는 법적 문제는 저작권 제도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총체적 문제로서 입법이나 해석만으로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지금 인공지능은 일정한 단계로 발전했으며 심지어 어떤 측면에서도 인간을 초월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각 복잡성과 지적 수준까지는 거리가 멀다. 인공지능의 보급은 인간이 창조적인 작품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며, 인공지능이 사람의 도움 없어도 예술이나 창작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현재 각국은 입법과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중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다.

국제조약 및 영미,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을 보면 저작자의 신분이 인간에 한정되어

107) 윤선희/이승훈, 위의 논문, 187쪽.

108) Timothy L. Butler, "Can a Computer be an Author-Copyright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4, No.4, 1982, p.734.

109) Timothy L. Butler, op. cit., p.736.

110)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40쪽.

있는지는 서로 다르지만, 각국의 판례와 학설을 보면 인간에게만 저작자 신분을 인정해 준다. 인공지능에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에 큰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저작권법의 목표에 어긋난다. 인공지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인정해주면 과도한 보수가 이중 인센티브를 주고 인공지능에 대한 불평등 이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자를 사용자와 프로그래머가 공동으로 인정하면 새로운 공동 혹은 결합 작품의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서, 공동저작자의 경우 일부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동저작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영역에 포함시키면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 공중에게도 가치가 있는 작품은 그만큼 줄어든다. 게다가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고 고아저작물의 문제도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고 저작자를 격려하고 재창작을 촉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여 이런 방안은 인공지능의 개발자들을 최대한 격려하면서 기존의 법체계도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 업계의 법적 지위와 미래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법적 지위와 인공지능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손승우/김윤명,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 오승중,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제18판, 세창출판사, 2020.
-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5판, 弘文社, 2020.
- 정연덕, 저작권의 이해 개정판, 세창출판사, 2019.

2. 학술지

- 강명수, “저작인격권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제5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725-759쪽.
-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141-176쪽.
- 김진석, “‘약한’인공지능과 ‘강한’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 제117집, 철학연구회, 2017, 111-137쪽.
- 김현경,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331-374쪽.
- 남희섭, “창작 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언론과법 제18권 제3호, 한국언론법학회, 2019, 175-219쪽.
- 민경재, “서양에서의 저작권법 성립 역사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85-317쪽.
- 박재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선 인지과학적 접근”,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지 제6권 제10호, 2016, 539-547쪽.
- 배대현, “저작자보호의 관점에서 본 앤 여왕 저작권법(Statute of Anne)”, IT와 法연구

- 제9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4, 59-94쪽.
- _____,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법리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권 제21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6, 147-192쪽
- 박인회/이봉림,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35-258쪽.
-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83-110쪽.
- 신재호, “저작자 개념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61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209-248쪽.
- 윤권순, “영국 저작권법상 ‘창작성(originality)’ 개념의 역사적 기원”,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73-106쪽
- _____,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기원”,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2018, 89-123쪽
- 윤선희/이승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52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155-197쪽.
- 이성웅, “원숭이 셀카의 저작자성 -미국의 *Naruto v. Slater Case*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제30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95-129쪽.
-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37-72쪽.
- 정원준,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고려법학 제9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263-303쪽.
- 차상욱,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5-69쪽.
- 천성권, “영국저작권법과 저작자”, 한양법학 제30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9, 215-232쪽.
- Ana Ramalho, “Will Robots Rule the (Artistic) World? A Proposed Model for the Legal Status of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Journal of Internet Law*, Vol.21 No.1, 2017, pp.13-19.
- Annemarie Bridy, “Coding Creativity: Copyright and the Artificially Intelligent Author”,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Vol.5, 2012, pp.3-23.
- Christopher Buccafusco, “A Theory of Copyright Authorship”, *Virginia Law Review*, Vol.102,

2016, p.1255-1260.

Gerald Spindler, "Copyright Law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Vol.50, 2019, pp.1049-1051.

Holly C. Lynch, "What Do an Orangutan and a Corporation Have in Common?: Whether the Copyright Protection Afforded to Corporations Should Extend to Works Created by Animals", *Ohio Northern University Law Review* vol.42 Iss. 1, 2015. p.270.

Kalin Hristov,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pyright Dilemma",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The Franklin Pierce Law Center*, Vol.57 No.3, 2017, pp.438-445.

Megan Svedman, "Artificial Creativity: A Case Against Copyright for AI-Created Visual Artwork", *IP Theory*, Vol.9: Iss.1, 2020, p.15.

Pamela Samuelson, "Allocating Ownership Rights in Computer-Generated Works",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Vol.47, 1986, pp.1192-1224.

Peter Jaszi, "Toward a Theory of Copyright: The Metamorphoses of 'Authorship'", *Duke Law Journal*, Vol.40 No.2, 1991, **p468-469**.

Robert C. Denicola, "EX Machina: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Generated Works", *Rutgers University Law Review* Vol.69:251, 2016, pp.266-287.

Robert Yu, "The Machine Author: What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s Appropriate for Fully Independent Computer-Generated Work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65 Iss.5, 2017, pp.1253-1266.

Russ Pearlman, "Recogniz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as Authors and Inventors Under U. S. Intellectual Property Law", *Richmond Journal of Law & T Technology*, No.2, 2018, pp.8-11.

Ryan Abbott, "I Think, Therefore I Invent: Creative Computers and the Future of Patent Law",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57 Iss.4, 2016, pp.1079-1121.

Shlomit Yanisky-Ravid, "Generating Rembrandt: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and Accountability in the 3A Era-The Human-Like Authors Are Already Here-A New Model", *Michigan State Law Review*, Vol.659, 2017, pp.725.

Timothy L. Butler, "Can a Computer bean Author-Copyright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4, No.4, 1982, pp.734-736.

Victor M. Palace, “What if Artificial Intelligence wrote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Florida Law Review*, Vol.71, 2019, pp.228-240.

3. 기타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판결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111 U.S. 53(1884).

Case No. 15-cv-04324-WHO, Dkt. Nos.24, 28.

Diamond v. Am-Law Publishing Corp., 745 F.2d 142 (2d Cir. 1984).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 S. 340 (1991).

Naruto, et al., v. David John Slater, et al., U. 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Millar v. Taylor(1769), 98 ER 201.

국민일보, “김주하 앵커 아니었어? 소름돋는 AI 아나운서 데뷔 장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930259&memberNo=12282441&vType=VERTICAL>>

동아사이언스, “인공지능 밀린 기자,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https://dongascience.com/news.php?idx=10943>>

新浪VR, “人工智能微軟小冰:2020WAIC主題曲《智聯家園》創作人”, <http://vr.sina.com.cn/news/hz/2020-07-09/doc-iircuyvk2932467.shtml>.

[Abstract]

Determination of the Auth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Chung, Yeun-Dek**

Yun Bo***

In modern copyright law, which began with Queen Anne's Law, the author plays a very important role as the subject of the work. As such, identifying the author's identity is a matter of priority.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s, granting author status to anyone has been discussed under copyright law since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in 1884,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gain an issue of legal issues concerning the confirmation of author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Though it was thought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should be protected by law, the problem is that only creations expressing human thoughts or emotions can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addition, only human beings can be recognized as authors in precedents and theories.

This paper introduces the author problem of the distant, recent iss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review the author's concept through content on the author's concept of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law countries. It also looks at each opinio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er, user, co-author, investor, and public domain) to give author status 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and to learn about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conclusion is also most relevant if the user is given the author status.

There is a reason for all the theories about the possible subj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but no matter how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give the author status. The opinions given to programmers and co-authors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17

**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Completed the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have their own advantages, but they also represent new problem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 investor to recognize his or her identity as a writer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creation process himself. Entering the public domain violates the ultimate purpose of copyright law and is also disadvantageous for creation.

Acknowledging programmers and investors can give double incentives and lead to the use of inequality in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 trend limits the incentive to put resources into the futur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works against programmers and investors. Co-authors may create problems with new collaborative or combined works, so it seems to avoid problems rather than include them in co-authors because they have some advantages, but they represent new problems. Included in the public domain violates the basic purpose of copyright law, and the number of works of value to the public is reduced. In addition, it can cause inconvenience and confusion for users and the problem of orphan crops can reappear.

Therefore, granting a user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the author status avoids inhumane problems, and then the user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creation process. Finally, it can encourage authors and promote re-creation. In other words, it is most appropriate for a user to be regarded as the author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Key Words] Author,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rtificial Intelligence Authors, Users, Public Domain